

2019년 제13차 이사회 회의록

구 분	이 사
임원정수	7 인
재적임원	7 인
참석임원	6 인

1. 일시 : 2019년 10월 30일(금) 10:00 (회의소집 통보일 : 2019년 10월 22일)

2. 장소 :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믿음관(본관) 2층 회의실

3. 임원 출·결 사항

○ 참석 임원

- 이사(6인) : 안현수, 김관목, 강성중, 이인규, , 이성렬, 박정호

○ 불참 임원

- 이사(1인) : 김종효

4. 심의·의결 안건

(1)

(2)

(3) 법인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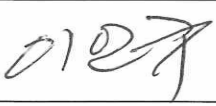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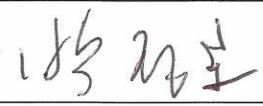
(4) 법인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

(5) 법인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

(6) 중등학교 고정자산(차량운반구) 매각(폐차)에 관한 사항

5. 보고사항

(1) 수익용 기본재산(토지) 처분에 관한 사항

간서명	이사 	이사 	이사 
-----	--	---	--

6. 회의 내용

[개회선언]

이사장 안현수 : 바쁘신 와중에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본 이사회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.

[전차 회의록 보고]

이사장 안현수 : 전차 회의록이 합법적이고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대표 간서명자에 의하여 확인되었음을 법인사무국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.

< 법인사무국 국장은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다 >

이사장 안현수 : 전차 회의록이 합법적이고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접수해도 되겠습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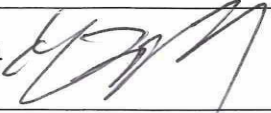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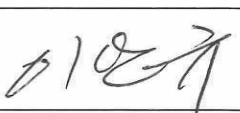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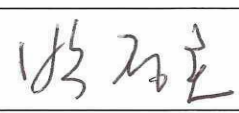
이 사 박정호 : 회의록에 어떠한 상이한 점이 있다거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.

< 참석이사 전원 전차 회의록을 접수하자고 하다 >

이사장 안현수 : 전차 회의록은 수정 없이 접수되었음을 선언하다.

[심의 · 의결 사항]

제1호 안건 :

간서명	이사 	이사 	이사 
-----	--	---	--

이 사 김관목 : 제1호 안건에 대하여 비공개로 할 것을 제안하다.

이 사 강성종 : 동의하다.

이 사 이인규 : 제청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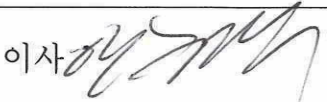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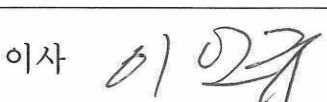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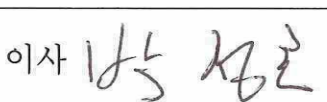
〈 제1호 안건 및 비공개에 대하여 이사장이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〉

〈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의사를 거수로 표시하다 〉

이사장 안현수 :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호
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
불임과

제2호 안건 :

간서명	이사 	이사 	이사 
-----	--	---	--

또한 본 안건에 대하여 비공개로 할 것을 제안하다.

이 사 박정호 : 동의하다.

이 사 이인규 : 제청하다.

< 제2호 안건 및 비공개에 대하여 이사장이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>

<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의사를 거수로 표시하다 >

이사장 안현수 : 제2호 안건

은 불

임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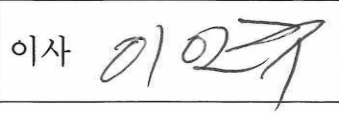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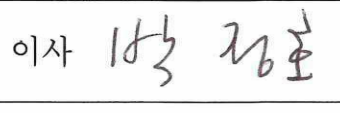
< 제3호 안건 : 법인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>

이사장 안현수 : 제3호 안건으로 법인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을 상정합니다. 본 안건은 계속해서 김준기 법인사무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

< 회의 자료를 배부하다 >

국 장 김준기 : 본 안건은 「고등교육법」 및 「사립학교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법인정관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설명하다.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 사 강성종 : 본 안건은 상위법에 맞게 법인정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다.

간서명	이사 	이사 	이사 
-----	--	---	--

이 사 김관목 : 동의하다.

이 사 박정호 : 제청하다.

< 제3호 안건에 대하여 이사장이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>

<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의사를 거수로 표시하다 >

< 제4호 안건 : 법인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>

이사장 안현수 : 제4호 안건으로 법인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을 상정합니다. 본 안건은 김준기 법인사무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

< 회의 자료를 배부하다 >

국 장 김준기 : 본 안건은 2019년 제9차 이사회에서 상정된 제정안을 수정·보완 하여 재상정된 사항으로 행정권한의 위임전결을 제정하여 법인사무국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책임행정 체제의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사장 안현수 :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시어 본 안건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 각 이사들 배부된 자료를 검토하다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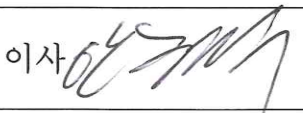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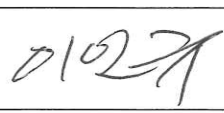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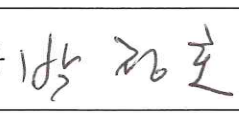
이 사 이인규 : 본 안건의 수정보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다.

국 장 김준기 : 행정권한의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 제정안의 수정·보완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다.

이 사 이인규 : 본 안건은 충분히 검토하여 보완된 것으로 보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다.

이 사 김관목 : 동의하다.

이 사 박정호 : 제청하다.

간서명	이사 	이사 	이사 
-----	--	---	--

< 제4호 안건에 대하여 이사장이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>
<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의사를 거수로 표시하다 >

이사장 안현수 :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4호 법인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은
보류할 것을 선포하다.

< 제5호 안건 : 법인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선임에 관한 사항 >

이사장 안현수 : 제5호 안건으로 법인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선임에 관한 사항
을 상정합니다. 본 안건은 김준기 법인사무국장이 설명하도록
하겠습니다.

< 회의 자료를 배부하다 >

국 장 김준기 : 본 안건은 법인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위원을 학교별로 구성함
에 따라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배부
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사장 안현수 :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시어 본 안건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
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 각 이사들 배부된 자료를 검토하다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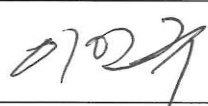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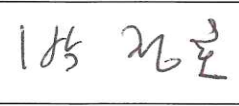
이 사 강성종 : 변경예정인 신임위원에 대하여 문의하다.

국 장 김준기 : 변경예정인 신임위원의 약력에 대하여 설명하다.

이 사 김관목 : 신임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문의하다.

국 장 김준기 :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여 2020. 4. 25.까지 임을 설명하다.

이 사 김관목 : 신임예정인 위원의 약력으로 보아 본 법인 징계위원회의 위원
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원안대로
처리할 것을 제안하다.

간서명	이사 	이사 	이사 
-----	--	---	--

이 사 강성종 : 동의하다.

이 사 이인규 : 제청하다.

< 제5호 안전에 대하여 이사장이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>

<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의사를 거수로 표시하다 >

< 제6호 안전 : 중등학교 고정자산(차량운반구) 매각(폐차)에 관한 사항>

이사장 안현수 : 제6호 안전으로 중등학교 고정자산(차량운반구) 매각(폐차)에 관한 사항을 상정합니다. 본 안전은 우동한 행정실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

< 회의 자료를 배부하다 >

행정실장 우동한 : 매각 대상인 차량운반구는 45인승 대형승합으로 노후 및 훼손 마멸 등으로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매각(폐차)하고자 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사장 안현수 :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시어 본 안전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 각 이사들 배부된 자료를 검토하다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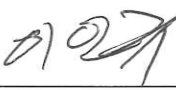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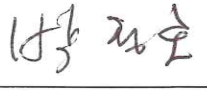
이 사 김관목 : 해당 차량의 주행거리에 대하여 문의하다.

행정실장 우동한 : 2007년식 차량으로 주행거리가 213,301km임을 설명하다.

이 사 강성종 : 해당 차량의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바 본 안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다.

이 사 이인규 : 동의하다.

이 사 박정호 : 제청하다.

간서명	이사 	이사 	이사 
-----	--	---	--

< 제6호 안건에 대하여 이사장이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>
<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의사를 거수로 표시하다 >

[보고사항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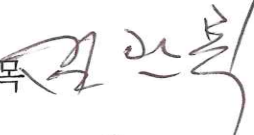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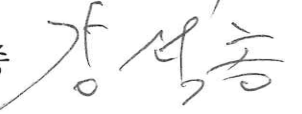
1. 수익용 기본재산(토지) 처분에 관한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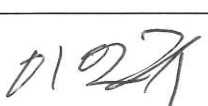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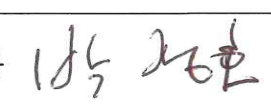
[폐회선언]

이사장 안현수 :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이사회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
간서명은 저와 이인규 이사님, 그리고 박정호 이사님께서 대표
로 하시겠습니다. 이상으로 이사회를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.

위의 회의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, 이사장과 출
석한 이사 전원이 다음과 같이 서명하다.

2019. 10. 30.

학교법인 신홍학원 이사장 안 현 수 
이 사 김 관 록 
이 사 강 성 종 
이 사 이 인 규 
이 사 이 성 렬 
이 사 박 정 호 

간서명	이사 	이사 	이사 
-----	--	---	--

[붙임3] 법인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

□ 정관개정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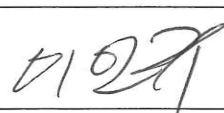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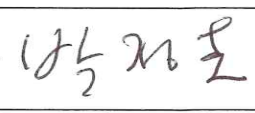
-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의2 개정(2018.12.18., 2019.8.1.시행)됨에 따라 교원의 구분에 강사를 포함하고, 강사임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- 강사임용의 자격기준·임용기준·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방법·재임용절차·면직사유·임용기간(1년 미만의 예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) 및 임금 등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인사규정으로 정하도록 함
- 「사립학교법」 제66조의4 개정(2018.12.18., 2019.8.1.시행)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에 관한 사항 - 제39조의2
- 교원 휴직에 관한 사항 - 제40조
- 교원 정년에 관한 사항 - 제46조의2
-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사항 - 제61조의2
- 부칙에 관한 사항

□ 정관 변경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변 경 (안)
제39조의2(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) ① 제39조제1항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. 1. 근무기간 가. 교수 : 정관 제46조의2에 규정하는 정년까지의 기간. 다만,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. 나. 부교수, 조교수 :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<신 설> 2. 급여 : 직무의 성격·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직위·직무 등급별로 구분하고, 개별업적 및 성과	제39조의2(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) ① (생략) 1. (생략) 가. ~ 나. (생략) 다. 강사 : 1년 이상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(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1년 미만의 기간) 2. ~ 6. (생략)

간서명	이사 	이사 	이사 
-----	--	---	--

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
3. 근무조건 :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
4. 업적 및 성과약정 : 연구실적·논문지도·진로상담·학생지도 및 학교공헌업적 등에 관한 사항
5. 재계약 조건 및 절차 :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<신 설>

② 삭제<2007.12.21>

제40조(휴직의 사유)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
1. ~ 10. (생 략)

제46조의2(교원의 정년)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. 다만,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61조의2(징계사유의 시효)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(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)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.

<신 설>

7. 자격기준·임용기준·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방법·재임용절차·면직사유·임용기간(1년 미만의 예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) 및 임금 등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인사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삭제<2007.12.21>

제40조(휴직의 사유) 교원(강사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
1. ~ 10. (생 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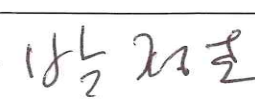
제46조의2(교원의 정년) 교원(강사를 포함한다)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. 다만,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61조의2(징계사유의 시효) ① 징계사유의 시효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
<부 칙>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강사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용행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강사에 대하여는 이 정관에 따라 임용되는 것으로 본다.

간서명	이사 	이사 	이사 
-----	--	---	--

[붙임4] 법인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

□ 제규정명 : 「행정권한의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」

□ 제정사유

- 행정권한의 위임전결을 통한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의사결정의 적시성을 제고
- 책임행정 체제의 확립과 행정능률을 도모

□ 주요내용

- 총칙에 관한 사항 - 제1조부터 제5조까지
- 전결사항에 관한 사항 - 제6조부터 11조까지
- 상임이사 전결사항에 관한 사항 - 제12조
- 법인사무국 전결사항에 관한 사항 -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
- 보칙에 관한 사항 - 제16조
- 부칙에 관한 사항

[붙임5] 법인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

□ 관련

- 학교법인 신흥학원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 제2조(구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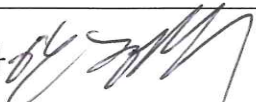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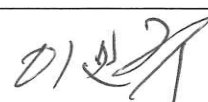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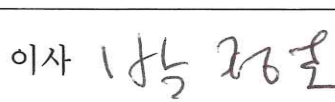
□ 사유

-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위원을 학교별로 구성함에 따라 위원을 변경하고자 함.

□ 일반직원 징계위원회(대학) 구성

구 분	법인	대학 및 중등	외부위원	비고(임기)
변경 전	이인규	김효겸, 김남중, 우동한, 김주현	-	~2020.04.25
변경 후	이인규	김효겸, 김남중, 민철기, 김주현	-	~2020.04.25

※ 위원 선임 기간 :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함.

간서명	이사 	이사 	이사 
-----	--	---	--

☐ 신입위원 약력

- 성 명 : 민 철 기 (閔 喆 基)
- 생년월일 : 1970. 07. 10.
- 현 주 소 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31 304동 702호
- 주요 경력
 - 現 신한대학교 산학협력팀 팀장
 - 現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 강사
 - 前 호서대학교 입학과장
 - 前 학교법인 호서학원 법인팀장

[붙임6] 중등학교 고정자산(차량운반구) 매각(폐차)에 관한 사항

☐ 관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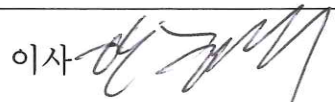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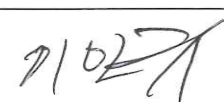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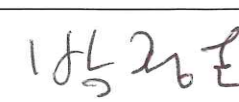
-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제1호
- 학교법인 신흥학원정관 제27조제2항제1호
- 신흥중학교-9766(2019.10.22.) “이사회 심의안건”

☐ 매각사유

- 노후 및 훼손마멸 등으로 과다 수리비용 소요
- 차량 노후화로 인한 운행시 학생안전 위협

☐ 매각(폐차) 차량운반구 내역

자산내역	품목명	자동차 등록번호	취득일자	주행거리	구입금액(원)	매각(폐차) 예정금액(원)	비고
차량운반구	대형승합 (45인승)	76소9850	2018.11.02. (중고품구매)	213,301km	4,400,000	2,000,000	신흥중

간서명	이사 	이사 	이사 
-----	--	---	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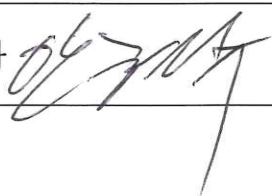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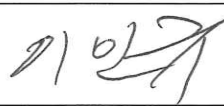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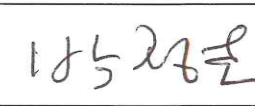
[보고1] 수익용 기본재산(토지) 처분에 관한 사항

□ 관련

- 학교법인 신흥학원 정관 제32조(수익사업의 종류)
- 법인사무국 제582호(2019.08.09.) “기본재산 처분허가 및 전세권설정 허가신고”
- 사립대학정책과-10834(2019.08.21.) “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및 전세권설정 신고수리”
- 법인사무국 제712호(2019.09.03.) “수익용기본재산 처분보고”

□ 재산 처분 내역

구 분	내 용	비 고
매도인	학교법인 신흥학원	
매수인	이지선	
처분일자	2019.10.04.(금)	
소재지	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산74-10	
처분면적	161㎡	
처분금액	금 이억구천사백육십삼만오천원(294,635,000원)	

간서명	이사 	이사 	이사 
-----	--	---	--